

독일의 공공교육에서 종교자유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현황

한 성 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요 약〉

독일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은 종교개혁 때 루터에 의해서 실시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과 그에 바탕을 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7조 3항에 근거해서 현재 독일에서 종교수업은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교단에 위임하여 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기독교 교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수업은 주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신앙고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유럽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크게 흔들어놓은 1968년 학생운동 이후 다양한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알기 수업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브란덴부르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LER를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윤리, 가치 등의 다양한 이름의 종교알기 수업이 이미 기독교 종교수업을 대체하였다. 베를린에서는 곧 가치과목만을 공립학교의 정규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고 종교수업은 비정규과목으로 가르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 종교수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핵심 주제어 : 종교수업, 헌법, 중립, 신앙고백, 종교알기

I. 독일 종교교육의 역사

독일의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종교수업은 학교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었다. 중세 때부터 기독교의 교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반국민은 그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개신교에서 세운 초등학교에서 그가 지은 소(小) 교리문답서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루터는 교육을 ‘세상의 일’이라고 하여 교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¹⁾ 부모는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가 그 임무를 맡도록 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 학교에서는 교리문답과 함께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쳤는데 이는 종교개혁의 관심사가 신앙심을 고취하는 데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배우도록 하는 데에 비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²⁾

종교개혁 이후 종교교육의 기본 형태는 교리문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계몽주의에 이르러 이러한 암기식 방법을 버리고 학생들은 교사의 주의 깊고 현명한 질문을 통해서 “참된 개념들”을 찾아냄으로써 이성을 개발하도록 교육받았다. 이에 반하여 이후에 나타난 쉴라이어마허는 종교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감정에 있다고 하였으며³⁾ 이어서 헤르바르트는 “종교는 모든 인간의 의존의 감정과 지고한 존재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한다”⁴⁾고 하여 교회에 대해서도 “자발적이지 않은 피상적인 신앙 고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와 같이 종교를 이성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과 종교를 직관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움직임은 현재의 종교교육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대립되는 흐름, 즉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알기 수업과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신앙고백적인 수업의 대립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848년의 혁명 실패 이후의 왕정복고시기에 이르러 종교교육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즉 프로시아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때에 작성되어 1854년에 반포된 ‘프로시아 조례’는 청소년들이 종교교육을 통해 “기독교적이고 애국적 심성”과 “가정적인 덕성”을 갖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와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국가 이성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담당했던 것인데⁶⁾ 뒤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도 1889년의 훈령

1) 윤웅진, <기독교교육과 정치- 독일의 기독교(종교) 교육사 개관>, 한신대학교 출판부, 한신논문집 제7권, 1990. 236쪽.

2) Friedrich Schweitzer, Religiöse Erziehung und Religionsunterrich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3) Friedrich Schleiermacher, “Ue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1799), hrsg., v. Carl H. Ratschow, Stuttgart 1980. 윤웅진, 238쪽에서 재인용.

4) Johann Fr. Herbart's saemtliche Werk, hrsg. v. K. Kehrbach, Bd.4, Leipzig 1891, S. 517. 재인용, 윤웅진, 240쪽.

5) Johann Fr. Herbart's saemtliche Werk, hrsg. v. K. Kehrbach, Bd.4, Leipzig 1891, S. 462. 윤웅진 240쪽.

을 통해 교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기를 추구함으로써 종교교육은 한동안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이와 같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시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공립학교에서 필수과목이라는 확고한 위치만큼은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 이에 대해서 계몽주의 이래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세속주의의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면서 종교수업을 공립학교의 정규과목에서 빼내려는 시도 역시 끊임없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쐈기를 박은 것이 1918년의 바이마르헌법 149조였다.⁷⁾ 이 법을 통해서 종교수업은 국립학교의 정규과목이라는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국가는 종교수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가운데 학교 설립 취지에 ‘무종파’가 명시된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었다.

또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도 헌법에 의해서 명시되었으며⁸⁾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교 또는 구교의 교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바이마르헌법의 이러한 틀은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대두된 나치 정부는 종교수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여 종교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종교교육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그러나 바이마르헌법은 1949년에 건국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계승되어 종교수업은 다시 공립학교의 정규과목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다. 반면에 동독 지역의 모든 주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금지되어 종교수업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교 밖에서 지역교회의 범위 안에서 교리문답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졌다. 그 대신에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필수과목으로서 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었다.

1945년 이후 서독의 독일연방공화국의 모든 주에서는 종교 수업이 부활되어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교사들은 단순히 종교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달하는 신앙고백적 수업을 했다. 이러한 종교 수업의 내용은 이미 세속화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계층으로부터 비판받게 되었다. 1960년대 말에 일어난 68학생운동은 유럽사회를 뒤흔든 커다란 개혁운동이었다. 모든 보수적인 기존의 것을 거부하였던 68 운동세대들은 종교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회의를 가지고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68 운동의 영향으로 유럽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계층과 점점 개방되어 가는 계층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그 극단 사이에는 다양한 계층

6) 윤웅진, 243쪽.

7) Geschichte des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land, Die Rechtslage, <http://www.religionsunterricht-online.de/>

8) 독일헌법 14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된 바이마르헌법 136조와 137조는 그 밖의 몇 개의 조항들과 함께 국가와 종교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중립성과 국민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137조1항의 “국교는 없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국가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존재하게 되어 사회의 다원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그에 따라 공립학교의 종교수업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1969년 자알란트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종교 수업과 관련된 학교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때 개정된 학교법은 헌법 7조 3항에 따라 종교 수업이 정규 과목이라는 것을 규정하되, 그와 동시에 7조 2항에서는 학부모 (또는 법적으로 종교적 성년이 되는 14세의 학생 스스로)가 종교수업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 지역에 속했던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작센-안할트, 브란덴부르크, 튀링엔, 작센의 다섯 주 가운데 브란덴부르크를 제외한 네 개의 주에서는 종교수업이 다시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종교수업 대신에 3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1995년부터 LER(생활규범 / 윤리 / 종교 *Lebensgestaltung / Ethik / Religion*)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규과목으로 정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모델은 그동안 헌법에 따른 예외지역으로서 한 번도 종교수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친 일이 없던 베를린에도 도입되어 ‘가치’교과라는 이름으로 2006/07학기부터 정규과목으로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I. 독일 종교교육의 법적 현황

독일 헌법 제7조는 학교에 관한 법률로서 그 가운데 종교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인다.
- 2) 교육권자는 아이의 종교수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무종교를 표방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정규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에 저촉 받는 일 없이 종교수업은 헌법에 맞게 교단에 맡겨진다. 교사는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종교수업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없다.

위의 조항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에서 종교교육은 국가의 임무로서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행해진다. 국가는 기본권 7조3항에 따라 종교교육의 주체이며 기본권 7조1항에 따라 종교수업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금지된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점에서 독일은 가톨릭국가인 이탈리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탈리아와는 달리 독일에는 헌법에 따라 국교가 없으며, 국가는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수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교단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립학교에서 자기네 종교를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해당 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는

이에 있어서 부모나 아이들이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교단에 협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특정종교로 하여금 학교에 정규과목을 개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교는 없으면서도⁹⁾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를 일으킨다. 즉 국가는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면서도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며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수업이 주로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기독교에 한정될 때 이러한 상황은 종교와 관계된 여러 이해집단들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각각의 종교공동체 또는 비종교공동체는 각기 자기들의 이해에 맞는 헌법이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호소하게 되는데 흔히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현행 헌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기독교의 입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19년에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의 136조와 137조는 국가와 교단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독일헌법 140조에 의해서 헌법의 일부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7조 1항은 독일에 더 이상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프랑스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를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서 세속의 국가공동체를 자유의 구심점에 놓음으로써 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와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종교는 공공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오직 개인적인 영역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그에 반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시행된 종교권은 국가와 가톨릭 및 개신교의 두 교단 사이의 관계를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설정하여 공공의 삶, 즉 학교의 종교수업이나 신학대학의 교수 임명, 군대와 요양원의 목회, 교회세 징수, 사회사업, 장례식 등에서 교회가 가지는 의미를 인정해 주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와 같은 사회시설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며, 교회에 등록된 신자들에게 교회는 종교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는데 종교세 징수는 국가에서 집행한다. 또한 교회는 신학과 교수임명 과정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 양로원, 각종 상담소, 학교, 직업학교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는 독일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다양한 신앙과 종교다원적인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식처로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국가의 종교적인 중립은 프랑스의 세속주의에서처럼 국가와 종교의 절대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국가가 국민들이 공공의 삶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헌법 제4조에 따른 종교 자유의 보장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중립을 지키되 교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공적인 종교 활동을 지원해주도록 한 독일의 헌법은 오랜 기독교적 역사와 전

9)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이마르헌법 137조1항은 “국교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을 고려해서 나온 교육책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수업은 국가와 교회의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위의 헌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현재 독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한 모든 독일의 주가 헌법에 규정한대로 종교수업을 정규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 종교 분포를 보면 2000년 기준 총인구 82,259,500 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32.6%에 해당하는 26,817,342 명이며, 개신교 신자는 32.3%에 해당하는 26,601,595 명이다. 또한 외국인 출신이 대부분인 이슬람 신자도 2001년 기준 3,200,000 명에 달한다.¹⁰⁾ 이와 같이 기독교 신자가 아직도 국민의 반 이상이 되는 국가에 있어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오랫동안 대다수 국민에게 그 사회의 척도가 되는 기독교적 윤리관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개발하고 심화시킴으로 해서 개인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독일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일한 사회가 아니며 국민의 가치관도 획일적인 기독교윤리관을 벗어나 종교 다원적이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각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의 기독교 종교수업이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의 세계관이나 윤리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짐에 따라서 타종교의 종교수업도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에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독일 통일 이전의 구동독 지역은 근본적으로 종교수업이 금지되었었고 따라서 통일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것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 대부분은 서독에서 실시되고 있던 방식을 따랐지만 브란덴부르크처럼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독일의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의 문제는 독일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척도가 극명하게 드러내는 첨예한 문제이다. 동시에 헌법에 근거해서 신앙의 자유와 한계를 모색하면서 합의의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성숙한 사회의 면모를 엿보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몇몇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III. 비기독교적 종교와 종교의 자유

1. 이슬람교 종교수업의 도입

독일헌법 7조 3항에 규정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특정한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

10) 권미연, <총기난사 사건 발생한 그 학교엔 종교수업이 없었다>, 《교육개발》 2003년 1월 통권 137호, 79쪽.

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수업은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수업이며 그 밖의 종교로는 유대교가 있고 최근에 니더작센에서 그리스 정교를 정규과목으로서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베를린에 이슬람교 종교수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베를린에서는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이 아니며 2006/7년부터는 '가치'과목이 정규과목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종교수업은 선택과목 정도로 도입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가치'과목의 주제를 다룰 때 보기로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대체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양대 기독교 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헌법 7조 3항을 보면 종교수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두 교단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교회라고 언급된 부분은 없으며 반드시 종교공동체(=교단) 또는 세계관공동체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수업할 권리를 지닌 교단의 자격 및 범위에 대해서도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단이든 자신들의 종교수업을 국가에게 공립학교의 정규과목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¹¹⁾

기독교 이외의 종교 중에서 지금 독일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는 단연 이슬람교를 꼽을 수 있다.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꽤 높아졌지만 특히 이슬람교는 급격하게 성장해서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독일 내 이슬람교도는 약 320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인 이슬람 교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독일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터키인이며 그 다음은 구 유고슬라비아인, 아랍인, 동남아시아인의 순서로 이어진다.¹²⁾ 이렇게 많은 신자를 가진 이슬람교에서 헌법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공립학교에 이슬람 종교수업의 도입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슬람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에서 이슬람교의 권리가 보장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기본권수호는 상호간의 권리인정을 담보로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주에서도 그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듯이 베를린 이슬람 연맹은 1980년대 초반부터 베를린의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수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 왔고, 그 결과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베를린의 공립학교에서도 이슬람 종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는 종교수업이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주에서 누리고 있는 정규과목으로서의 위상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것이며 2006/7년부터 예정대로 베를린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가치'수업이 정규과목으로 될 경우에 이슬람 종교수업이 이슬람을 믿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종교수업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다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다.

현재 일부학교에서 모국어수업 시간에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 제

11) Zusammenleben mit Muslimen in Deutschland, Gestaltung der christlichen Begegnung mit Muslimen, Eine Handreichung des Rates der EKD, http://www.ekd.de/glauben/islam_2000_islam3.html.

12) 세계의 종교현황: 독일의 종교, <http://www.gigabon.com/>

7조 3항에 따른 종교수업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립학교에서의 이슬람교 종교수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독일어로 진행되며 주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슬람교 종교수업은 기독교의 신앙고취 종교수업이 충족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육적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도입되어야 하며 교과과정 또한 정부의 정식 검사절차와 승인절차를 거쳐서 헌법이 말하고 있는 가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4조에 불문율로 내재돼 있는 종교적 관용도 수업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들이 이슬람 종교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에 맞는 엄격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슬람학생들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종교적 태도를 고취시킴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수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독일이 헌법을 통하여 공립학교에 종교수업을 설치한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이며 이슬람학생들의 경우에 독일에 사는 이슬람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신념과 함께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종교수업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독일의 기본가치에 대한 존중과 준수의 정신도 배워야하는데 다원적 사회의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기본가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¹³⁾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는 독일의 기본가치에 어긋나므로 포기해야 하며 이슬람국가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타종교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수업이 공립학교에 정규과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단 쪽의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있는 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추진해 온 것처럼 이슬람 내의 많은 종파를 초월하여 이슬람 종교 수업의 기본 교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종교 교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만이 근본주의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은 무엇보다도 적당한 대표기구를 정해야 할 것이다. 공립학교에서의 이슬람 종교수업은 이슬람교신자들의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가톨릭과 기독교의 양대 교회도 헌법 7조3항에 따라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두 교단은 브란덴부르크의 윤리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LER "(Lebensgestaltung-Ethik-Religionskunde 생활규범-윤리-종교 알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이슬람 종교수업이 공립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다. 헌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종교 공동체'라는 이름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의 종교 항목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 종교의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교 종교수업이 실제로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그 전망이 아주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란덴부르크 주나 베를린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의 경향은 종교수업 자체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윤리수업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Zusammenleben mit Muslimen in Deutschland, Gestaltung der christlichen Begegnung mit Muslimen, Eine Handreichung des Rates der EKD.*

2. 이슬람복장 착용금지와 종교자유의 문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 이슬람복장을 하고 등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세계관이나 종교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학생이나 부모, 선생의 부정적인 종교자유, 즉 종교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존중해줄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교사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수업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가 이슬람신자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는다면, 종교수업을 통하여 신앙심 고취를 장려하는 헌법 제7조 3항에 의거해 볼 때,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교사와는 달리 헌법차원에서 학생들은 종교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기 종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의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여학생은 두건을 쓰고 학교에 올 수 있다. 엄격한 세속국가인 프랑스는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표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두건을 쓰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았으나 독일에서는 여학생이 두건을 착용함으로써 자기 종교를 나타내는 행위는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라는 헌법 제 4조 2항에 따라서 충분히 존중받는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슬람 여학생들이 운동복을 입고 참가해야 하는 스포츠시간이나 이슬람학생들이 거부하는 성교육 수업 시간과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헌법에서 위촉받은 자신의 교육위탁권의 헌법조항을 잘 검토해서 두 조항 사이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성에 따른 분리를 통하여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하며, 학생의 수치심을 어느 선까지 배려해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그 판단기준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바덴 뷔르템베르크주가 이슬람교도인 여교사에 수업 중 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토대가 없다고 하여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두건착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결여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교육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진 주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함으로써 법적 보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건착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헌법을 통하여 이미 분명하게 규정된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1905년에 제정된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교회세도 거둘 수 없고 국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할 수도 없다. 2004년 초에 종교적 상징물을 공공의 장소에서 착용할 수 없다는 세속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그 동안에는 자유롭게 자기 종교의 복장이나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었던 학생들도 더 이상 눈에 띄는 종교적인 표시, 십자가, 두건 등을 몸에 걸치고 학교에 올 수 없게 되었다. 2004년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어 240명의 여학생들이 두건을 쓰고 학교에 왔을 때 교

사와 학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두건 쓸 것을 고집했던 학생들은 결국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서 수업 중에 두건을 착용했다가 당국에 의해 금지를 당했는데 스위스 헌법재판소는 97년에 이러한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교사는 다시 유럽연합의 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 법원은 2001년 2월 두건착용금지는 종교의 자유 혹은 차별금지에 반하거나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당국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이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유럽법원에서 결정 난 것처럼 대세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이다.

IV. 비종교적 윤리수업과 종교자유 의 문제

1. 비종교적 윤리수업의 도입

독일헌법 제4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와 세계관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
- 2)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헌법에 의한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자유 의 보장은 서양 역사에 있어서 다양한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 역시 무한한 것은 아니어서 법률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경우에는 제한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든가 성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헌법 제 7조 3항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수업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기독교가 독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 수업이 정규과목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대한 항의는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68년 이후에 학교법의 종교 수업 조항이 개정되어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종교 수업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에 대체과목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 주에 따라 학교법이나 주 헌법을 통해 윤리(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트, 자알란트), 철학(함부르크, 쉘레스비히-홀슈타인), 가치와 규범(니더작센) 등의 과목을 듣도록

했다. 또 종교와 윤리를 복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제시해, 둘 중 한 과목을 듣도록 한 경우도 있다.¹⁴⁾

정규과목의 종교수업은 성적이 매겨지며 진급에도 관련된다. 함부르크에서는 9학년부터 종교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등록의무는 없다. 13살까지는 부모가 종교수업 참여를 결정하고 12살부터는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4살부터는 종교적 책임을 인정받아 종교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종교수업을 받을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바이어른과 자랄란트에서는 18살이 되어야 결정권을 가진다. 사립 기독교학교에서는 학생의 종교수업참여는 의무이며 참여하지 않으려면 학교를 바꿔야 한다.¹⁵⁾

2. 브란덴부르크의 LER(생활규범/ 윤리/종교)의 도입

구 동독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 주는 통일이 되면서 모든 주에서 하고 있는 종교수업을 도입하지 않고 그 대신에 1992년부터 3년 동안 생활규범/윤리/종교 (LER: Lebensgestaltung/Ethik/ Religion)라는 모델을 44개의 학교에서 시도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에 따라 1995년부터 학교법에 의해 LER는 정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LER수업은 1주에 두 시간 씩 전 학년에 걸쳐서 통합단계와 분화단계로 분리되어 실시되는데 통합단계에서는 신앙과 상관없이 생활규범, 윤리, 종교를 포괄적으로 가르치며 방향설정 단계에서는 정규과목으로 제공되고 분화단계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가르친다. 브란덴부르크의 모든 학생은 LER에 참여해야 하며 LER 대신에 기독교의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종교수업을 받으려면 LER에 대한 수강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¹⁶⁾

이에 대해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관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가져갔다고 비판하며 헌법을 근거로 수 년 동안 종교수업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년간의 투쟁 끝에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교회는 기민련 원내 교섭단체 및 학부모와 학생들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년 상반기에 판결이 내려졌다. 생활규범/윤리/종교는 정규 필수 과목으로 존속하며, 종교는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서 도입된다는 것이었다. 교회와 기민련 쪽에서 보면 비록 필수과목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종교수업이 아예 없었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동의를 했고 2002년 6월 말에 주 의회에서 학교법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에서는 LER가 필수과목으로, 종교수업이 선택과목으로 실시되며 성적은 매기되 진급과는 상관이 없다.

14) 권미연, <총기난사 사건 발생한 그 학교엔 종교수업이 없었다>, 《교육개발》 2003년 1월 통권 137호, 78쪽.

15) Die Religionsunterricht in Deutschland, <http://www.religionsunterricht-online.de/ruberlin/recht.htm>.

16) Die Religionsunterricht in Deutschland, <http://www.religionsunterricht-online.de/ruberlin/recht.htm>.

3. 베를린의 '가치'과목의 도입

베를린은 헌법 141조의 “브레멘약관”에서, ‘1949년 1월1일에 다른 법률이 적용된 지역은 종교수업과 관련된 헌법 7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따라서 이 법의 예외 지역이 되었는데 브레멘도 이에 해당된다.¹⁷⁾ 그러므로 헌법에 의거해서 서베를린에서는 종교수업이 정규시간이 아니라 방과 후에 추가로 교단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다른 교단이나 이슬람교도들도 교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이슬람교 수업도 기독교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통일 후에는 베를린에 더 이상 예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통일조약의 1조2항에 따라서 베를린은 주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베를린의 23개 구역이 베를린 주를 형성한다.” 이 조항은 베를린이 지나간 위상에 대한 논란 없이 새로운 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베를린에서는 1948년 6월 26일의 베를린 학교법에 따라 종교교육은 기독교공동체인 가톨릭교단이나 개신교교단이 아니라 ‘종교 및 세계관 공동체’가 맡아서 했다. 현재 베를린에서의 종교수업은 아직 대부분은 교회소속의 종교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수 년 동안의 전문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학생들은 종교수업에 등록해야한다. 즉 종교수업은 비정규 선택과목이며 성적은 진급과 상관없다. 그에 대한 대체과목으로는 이슬람 종교교육과 또 휴머니즘동맹에서 제공하는 ‘윤리’ 내지는 ‘생활’과목이 있다.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좋지 않은 시간에 배정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는 일이 많으며 또한 타종교 사람들의 유입으로 주민구조가 바뀌었다는 것과 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이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짧아져서 일일 학습시간이 길어진 데에 따른 학습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률이 높지 않다. 다른 한편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이고 또 진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시험에 대한 공포 없이 시간 중에 일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10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1984년부터 무종파 이익 동맹인 독일 휴머니즘 동맹이 담당하는 ‘생활’교과가 교수되고 있다. 이 과목은 세계와 휴머니즘의 바탕 위에서 삶의 의미와 윤리적 가치를 찾아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휴머니즘과 보편적 인권 및 인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종교수업의 대체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¹⁸⁾

2005년 2월 7일 베를린에서 터키 출신 젊은 여성이 남자 형제들에 의해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큰 길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사회의 확실한 기본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시민당과 민사당의 전당대회

17) 위와 글.

18) 권미연, <충기난사 사건 발생한 그 학교엔 종교수업이 없었다>, 《교육개발》 2003년 1월 통권 137호, 78쪽.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베를린 주 정부는 일정기간의 준비를 거쳐 새 학년이 시작하는 2006/2007년 겨울학기부터 7학년 이상에서 가치수업을 정규 필수과목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교회는 당연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찬성이 나와 독일 사회는 이 문제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찬성하는 쪽은 공통적인 윤리 및 가치수업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편견을 깨뜨림으로써 종교를 떠나 사회통합에 필요한 공통적인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측의 견해는 자신의 문화권에 대한 토대가 없이는 타 문화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제대로 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통적 가치수업은 모든 종교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전달함으로써 상이한 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슬람 종교수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 이슬람 종교수업이 독일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규 선택과목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슬람 종교수업이 현재처럼 비정규과목으로 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이 독일의 가치체계와 공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종교수업이 사회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가치교과 수업만으로는 다양한 종교관과 세계관들이 곁잡기식으로 전달되어 학생의 성숙한 가치의식 성립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슈뢰더 수상은 자신의 베를린 사민당 동료들에게 교회와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의 수가 여전히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되고, 나치와 동독 시절을 제외하면 독일 공립학교의 역사에서 종교수업이 빠진 일이 없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앙고백과 연관된 종교수업이 단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정규과목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쟁은 베를린 주정부의 결정대로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가치교과만이 정규과목으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우리는 독일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온 과정을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법적 토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종교개혁 때부터 루터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기독교 종교수업은 베를린 주에서 그 존재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시점까지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그 변화과정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신앙고백적 수업과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알기 수업의 오랜 대립을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그 대립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루터가 공립학교에서 교리문답과 성서를 가지고 종교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목적이 위

기, 쓰기, 산술 등의 기본적인 교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었지만 그것은 신앙고백적인 수업을 도외시해서라기보다는 당시는 교회와 국가가 아직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신앙은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이후 계몽주의 전까지의 종교수업은 교리문답을 외우는 식으로 진행되어 깊은 체험에 의한 신앙심의 고취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계몽주의에서는 이성애 호소하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침으로서 뚜렷한 종교알기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슐라이어마허와 헤르바르트에 의한 신앙심은 이성으로 가르쳐지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직관에 의한 체험을 중요시 했다. 이후 시대에 따라서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대체적으로 신앙고백적인 전상에서 국가의 위임을 받은 가톨릭교단과 개신교교단의 두 기독교교단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확고하게 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으며 서독 시기를 거쳐 통일된 현재까지 독일의 헌법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헌법과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7조 3항에 근거해서 독일 공립학교의 종교수업은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교단에 위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교단이 맡아서 운영해 왔다.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신자이고 사회의 가치관이 단일했을 때는 이러한 체제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가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가치체계도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유럽 전역에 걸친 1968년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가치체계가 크게 흔들림으로써 기독교윤리관은 더 이상 종교수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었다. 비록 아직 외견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여전히 기독교종교수업은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브란덴부르크에서 시작되어 베를린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수업에 관한 논쟁은 전개 여하에 따라서 기독교 종교수업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대두된 윤리수업이나, LER, 가치수업 등은 모두 종교알기 수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업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다원성의 추구라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처럼 그러한 방식이 청소년의 가치체계 형성의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신앙고백적인 방식의 종교수업을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종교수업을 둘러싼 독일의 이와 같은 첨예한 논쟁을 통하여 사회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특히 그들이 합일에 도출하는 방식이 주로 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참고문헌

Friedrich Schleiermacher, "Ue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eachtern"

- (1799), hrsg., v. Carl H. Ratschow, Stuttgart 1980.
- Friedrich Schweitzer, Religiöse Erziehung und Religionsunterrich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Vortrag gehalten im Mai 2000 im Zusammenhang der Expo.
- Gerd Bockwoldt, Religionspädagogik, Eine Problemgeschichte, Stuttgart, Berlin, Koeln, Mainz 1977, S. 9-10.
- Geschichte des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land, Die Rechtslage, <http://www.religionsunterricht-online.de/>
- Ingrid Füller, *Gott und die Welt: Das Verhältnis von Staat und Kirche*, Deutschland Radio Berlin, Zeit Fragen, 21. November 2004, 15.05 Uhr.
- James M. Philips, 세계선교 흐름 속에 나타난 장로교 선교운동: 400년이 지난 미국 개신교 : 한 장로교인의 관점에서.
- Johann Fr. Herbart, Saemtliche Werk, hrsg. v. K. Kehrbach, Bd.4, Leipzig 1891.
- Martin Rang, Handbuch fuer den biblischen Unterricht, 2Bd., Tuebingen 1939.
- Max Reischle, Die Frage nach dem Wesen der Religion, Grundlegung zu einer Methodologie der Religionsphilosophie, Freiburg 1889.
- R.R. Osmer: Religion unterrichten in der staatlichen Schule in den USA: Aussichten und Moeglichkeiten. In: C.T. Scheilke/F. Schweitzer (Hg.): Religion, Ethik, Schule. Bildungspolitische Perspektiven in der pluralen Gesellschaft, Muenster u.a. 1999, 279-294.
- Zusammenleben mit Muslimen in Deutschland*, Gestaltung der christlichen Begegnung mit Muslimen, Eine Handreichung des Rates der EKD, http://www.ekd.de/glauben/islam_2000_islam3.html.
- 권미연, <총기난사 사건 발생한 그 학교엔 종교수업이 없었다>, 《교육개발》 2003년 1월 통권 137호.
- <베를린의 '이데올로기적 종교논쟁'>, 《교육개발》 2005년 5월 통권 151호.
- 김희자, 미국 교육목사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 기독교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1994.
- 노영찬, 종교학의 학문성과 그 방향: 북미주에서 본 관찰, 《종교와 문화》, 제1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박규태 외 지음, 《종교원기의 자유》, 청년사, 2000.
- 세계의 종교현황: 독일의 종교, <http://www.gigabon.com/>
- 손성, 종교의 자유와 현행불교법제의 현황과 과제, <http://www.gigabon.com/bbs/tb.php/z003/8>.
- 염철현, 평준화 제도 아래에서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일 고찰- 미국 공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005, Vol. 23, No.2 pp. 221-242.
- 윤응진, <기독교교육과 정치- 독일의 기독교(종교) 교육사 개관>, 한신대학교 출판부, 한신 논문집 제7권, 1990. 11.

원고접수: 2006년 11월 14일 1차심사: 11월 25일 게재승인일: 12월 12일

연구자 소개: 한성자

① 전공: 불교학 박사과정 수료, 독문학 박사 / 소속: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비교종교학

③ 주요논저: <여성의 출가와 성불을 통해 본 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의 이해>, <The Middle Path of No Abiding and No Leaving in the “Immutability of Things”>, <《문수 사리최상승무생계경》을 통해 본 지공화상의 밀교적 색채>

④ E-mail: resu80@dongguk.edu

Abstract

Historical and Legal Basis for the Found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Public Education in Germany

Sungja Han

Doctoral Course of Dongguk University

Germany has a long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ince Martin Luther's Small Catechism and the Bible were taught in the primary school at the time of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Weimar Constitution and Article 7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obligated to keep neutrality, but the churches, usually either Protestant, Roman Catholic or Jewish, are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religious courses are designed along confessional lines emphasizing religious devotion, which has met strong opposition from people who insist on teaching *about* various religions and values, especially since Student Movement of 1968. Classes like LER in Brandenburg and ethics or philosophy as alternative courses in some federal states show that teaching about religion has already replaced devotional religious education.

Currently there is an ongoing controversy in Berlin about the introduction of Ethics as a regular compulsory subject in public schools, while relegating Religion to the status of an elective. It reflects the crisis which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in the current movement of cultural diversity.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constitution, neutrality, religious devotion, teaching about religion